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15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이재관 · 장철민 · 허성무
허종식 · 문진석 · 권향엽
김태선 · 최혁진 · 김 윤
서미화 · 오세희 · 정진욱
김정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제1호 각 목에 따른 감면기간동안”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감면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와”를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로 한다.

1. 감면기간

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9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2. 감면비율

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

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라)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u>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u>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 ----- ----- ----- ----- ----- ----- ----- ----- -----제1호 각 목에 따른 감면기간동안----- ----- -----제2호 각 목에 따른 감면비율을----- -----.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
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
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
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
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 감면기간

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

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9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

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
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u>100</u> 2) <u>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 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u> 3) <u>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u> 4) <u>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 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u> 2. <u>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u>	<u>(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u> <u>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u> <u>2. 감면비율</u> <u>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u> <u>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u>
---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창업한 청년창

업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

업중소기업의 경우: 1

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

제권역과 인구감소지

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

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창업한 청년창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

(6) -----

과세연도(사
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
다.)와-----

